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단대동)

[별지 제33호서식]



디지털
DIGITAL LAW FIRM



(전화) (031)732-7700

(팩스) (031)731-6457

등부 2019년 제 2262 호

인 증 서

변호사사무소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회사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일 시 : 2019년 6월 7일 09:00

장 소 : 당 회사 본점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34 명, 발행주식수 694,645주
출석주주수 7 명, 출석주식수 504,645주

의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제 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사정상 정관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별첨 1 개정안과 같이 변경할 것을 찬성하여 가결하다.

- 정관 제11조, 12조, 25조 의 오탈자를 수정하고 잘못된 내용을 현행법에 맞게 정정 및 일부 개정함. (정관변경일자 : 2019년 6월 21일자부터 시행)

※ 별첨 1: 정관 일부 개정의 내용



○ 제 2호 의안: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관한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신주식을 발행해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신주식을 발행하기로 찬성하여 가결하다.

1) 신주의 종류 및 수량

5호상환전환우선주식 30,303주 : 시너지 밸류 웨이브 벤처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시너지아이비투자(주)

2)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금33,000원(자본금으로 계산하는 금액 금 500원)

3) 신주의 발행방법 : 제3자 배정방식(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정관 제 10조에 의거)

4) 자금조달의 목적 : 재무구조의 개선[운영자금의 조달]

5) 신주의 발행총액 : 5호상환전환우선주식 금 999,999,000원

6) 주금납입기일 : 2019년 6월 21일

7) 납입은행 및 지점명 :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은행코드 : 020557)

8) 신주식인수방법 : 정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배정

※ 별첨 2: 신주식의 내용

○ 제 3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다음과 같이 부여하는 것에 찬성하여 가결하다.

- 목적 : 임직원과 주주의 이해 일치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하고, 외부전문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회사의 장기적/궁극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 부여일 및 부여종류 : 2019.06.21.(정관 변경 시행일), 기명식 보통주
- 기준 행사가격 : 21,280원

부여대상자		부여주식수	행사가격(원)	행사조건
김하일	한국과학기술원	7,000	21,280	결의일로부터 3년~7년 (3년~5년:50%, 5년~7년:50% 분할행사)
이인규	경북대학교	7,000		
이희중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2,000		
신유진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1,000		
이승미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1,000		
이정이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1,000		
김민희	광주과학기술원	1,000		
합계		20,000		

○ 제 4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경영상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아래 후보자 2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것에 찬성하여 가결하다.

- 이사 후보자(2명) (각 취임일 : 2019년 6월 21일)

구분	후보자 성명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사내이사	김두섭	▶ 경력사항 2019~ JD Bioscience, Inc. 상임고문 2015~ DK Medicine 대표, 글로벌라이센싱	-	없음	

구분	후보자 성명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비고
		& 파트너링 2015~2018 초당약품 상임고문 2012~2015 (주)한독, 신약연구소장/연구임원 2009~2012 2016~2018, (주)카이노스메드, 부 사장/연구소장 1990~2009 Merck&Co. Inc. Senoir investigator ▶ 학력사항 1988 University of Pittsburgh Organic chemistry 박사 1981 서울대 Inorganic Chemistry 석사 1979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졸업			
사외이사	김한수	▶ 경력사항 2016~ 미래에셋캐피탈 바이오투자팀 수석 매니저 2008~2016 엘지생명과학 경영전략팀 차장 2004~2008 엘지생활건강 선임연구원 2002~2004 크리오칼리텍스 연구원 ▶ 학력사항 2002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원 약화학석사 2000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없음	

○ 제 5호 의안: 사내이사 보수 승인의 건

의장은 사내이사 후보자의 기존 근로계약내용을 설명하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내이사
의 보수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각 : 10: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19년 6 월 7 일

주식회사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
센터 에이동 110호(오룡동)

의장 사내이사 안 진 희



[별첨 1]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p> <p>①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p> <p>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p>	<p>폐지된 법안인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안에 맞게 정정함.</p>
<p>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p> <p>④제1항 내지 제4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상속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문맥상 오류를 내용에 맞게 정정함.</p>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p> <p>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p> <p>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p> <p>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p>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p> <p>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p> <p>1.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 340조의 2 제2항에서 정한 자 및 상법상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자 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상법 시행령 제9조의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폐지된 법안인 증권거래법을 현행법안에 맞게 정정함.</p>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p>	<p>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회사사정에 맞게 변경함.</p>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정정함.</p>
<p>제25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⑥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울산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경상일보에 1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25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⑥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광주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광주일보에 1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공고방법을 법인 등기상의 공고방법인 광주광역시내의 광주일보로 정정함.</p>

[별첨2] 신주식의 내용

제1관 배당 및 의결권 등

제1조 (배당)

- ①.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액 기준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배당금 및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은 우선주 배당일이 속하는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을 계산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 ④.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의 선택에 따라 “본건 우선주”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를 배당 받는다.

제2조 (잔여재산분배)

- ①. “본건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의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 ②. “본건 우선주” 주주는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는다.

제3조 (의결권)

- ①. “본건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본건 우선주”가 제2관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신주인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 ②.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주주와 본 계약을 준용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투자기업”이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자금의 조달 등 “투자기업”의 경영상 목적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관 전환

제5조 (전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일 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하 “전환권 행사기간”이라 한다)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권 행사없이 전환권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전환권 행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 ②. 전환조건은 “본건 우선주” 일(1)주당 보통주 일(1)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해 전환조건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③. “투자기업”은 전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제6조 (금지행위)

- ①. “투자기업”은 신주, 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이하 “신주 등 발행”이라고 한다)하는 경우,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건 우선주”의 일(1)주당 취득가격 및 제17조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본건 우선주” 일(1)주당 취득가격을 전환비율로 나눈 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및 행사가격 (이하 “발행가격 등”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의 “본건 우선주”의 일(1)주당 취득가격은 제9조의 “본건 우선주”의 주금 합계 총액을 “본건 우선주”의 총수로 나눈 가격으로 한다. 다만 “조합”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에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산한다.

제7조 (전환조건의 조정) “투자기업”이 제16조에서 규정된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등 발행”하는 경우 제16조 제1항에 의한 “조합”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전환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본건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 = (“조합” 의 “본건 우선주” 의 1주당 취득가격) / (“조합” 의 “본건 우선주” 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 등”)

①. “투자기업” 이 기업공개 및 M&A시 그 시점까지 조정된 전환가격과 기업공개시 공모단가 및 M&A시 주당 평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본건 우선주” 의 보통주 전환가격 이 조정된다.

②. 본건 우선주식 발행 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합” 은 “투자기업” 으로부터 “조합” 이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 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1\}$$

N_i : “조합” 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전 “조합” 이 보유한 우선주식수

B_c : 발행 전 “투자기업” 의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투자기업”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③. 조정되는 “전환가격” 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가격 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가격을 유지한다.

④. “투자기업” 의 분할 또는 합병 등 이해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 주” 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도록 “본건 우선주” 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⑤. “투자기업” 이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 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

⑥. “투자기업” 의 기한내 KPI 달성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은 조정된다.

KPI : NASH 적응증 약물에 대한 전임상완료 *전임상완료란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IND/임상시험계 획승인신청을 위한 모든 문서/Data 작업의 완료를 의 미함	전환가격
기한 : '21년 2Q	주당 24,400 원

⑦.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제8조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배당 등)

①. 전환권을 행사한 주식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 른다.

제3관 상환

제9조 (일반상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 후 2년 경과일로부터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환기간 및 범위 등)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동 자금을 “조합”이 상환 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본건 우선주”를 상환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본건 우선주”의 상환은 “투자기업”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배당 가능한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④. “투자기업”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우선적으로 적립할 필요성을 주지를 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은 관련 절차에서 이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⑤. “투자기업”은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일반상환권의 소멸)

“투자기업”이 제36조에서 정한 “기업공개”를 완료하는 경우, 제19조에 의거한 “투자기업”의 상환의무는 소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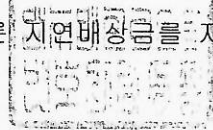
제12조 (특별상환권)

- ①.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조합”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에서 정한 상환 청구 가능 기간 전이라도 “투자기업” 및/혹은 “이해관계인”에 대해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 제7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투자기업”이 고의·중과실로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자료제출의무, 보고의무, 협의절차, 동의절차 준수 의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조합”의 투자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 또는 은폐시킨 경우. 단, “투자기업”이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4조, 제6조 제1항, 제11조,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0조 내지 제35조, 제39조 내지 제42조, 제44조, 제45조, 제52조, 부속명세 첨부1 내지 첨부3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는 경우

4.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주요 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경우
5.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제19조에 따른 일반상환권 청구 가능 기간 이전이라도 “조합”과 “투자기업” 간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 ①. 특별상환권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은 그 사실을 “투자기업”에 통보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1개월]내에 “조합”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건 우선주”는 “조합”의 시정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건 우선주”의 일(1)주당 상환가액은 “조합”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2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 1주당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투자기업”이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상환가액)

“본건 우선주”의 일(1)주당 상환가액은 **이전날의 1주당 취득가격과 동 취득가격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0%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 1주당 기지급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 14 조 (상환의무)

- ①. “투자기업”은 “조합”의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②. “투자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게 전항의 기간 내에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 항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익금의 처분시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19]%를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본건우선주”의 상환에만 총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별첨 2의 세부조항은 신주계약서의 조항을 참조함)



등부 2019 년	제 2262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 ----- 의		
2019년 06월 07일자 임시주주총회 -----		
의사록에 대하여 주주검사내이사 안진희, 주주 김두섭 등의 대리인 김가령은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이 제시한 운전면허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		
2019년 06월 26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디지털		
수원지방검찰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69 (단대동)		
공증담당변호사 강용필		
아 래		
1. 진술서	2. 주주명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4. 정관	5. 확인서	6. 위임장 7. 인감증명서 -----